

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

의안 번호	30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6.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관 련 부 서 :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과

제안사유

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

주요골자

- 지출 건수 : 2건
- 지출결정액 : 312,287,000원
- 지 출 액 : 312,285,830원
- 잔 액 : 1,170원
- 지출 사항
 - ①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272,835,740원
 - ② 제천중학교 민간인 사망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 39,450,090원

예비비지출내역

(단위:원)

건 명	지출결정일	지출결정액	지 출 액	잔 액	비 고
손해배상 합의 배상금	'99. 2. 8.	145,460,000	145,460,000	0	기계공고 김선우학생 1심판결 50%
손해배상 합의 배상금	'99. 7. 7.	39,451,000	39,450,090	910	제천중 민간인 사망사고
손해배상 합의 배상금	'99. 12. 23.	121,385,000	121,385,000	0	기계공고 김선우학생 2심판결(확정)
손해배상 합의 배상금	'99. 12. 31.	5,991,000	5,990,740	260	기계공고 김선우학생 치료비 공단부담금 50%
계		312,287,000	312,285,830	1,170	

예비비사용명세서 : 붙임

'99 예비비 사용 명세서

(단위: 원)

장	관	과 목				예비비 지출결정액	예비비 사용액	잔액	비고
		항	세항	세세항	목				
본청	교육 행정비	교육행정 기관운영비	기획관리국 운영	기관 운영비	배상금	312,287,000	312,285,830	1,170	
합						312,287,000	312,285,830	1,170	

□ 예비비 지출사유

①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

- 1996. 10. 23.부터 10. 30.까지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되는 전국 기능경진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'96. 10. 23., 10:30경 대청소를 하던 중 항공과 1학년 김선우의 4명이 제초 작업한 후 풀을 버리고 오다가 행사준비로 옮겨놓은 이동식 축구골대에서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가 축구골대가 넘어지면서 김선우 학생을 덮쳐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임
- 제1심 1998. 11. 11. 청주지방법원 원금290,913,067원 배상 판결 (손해배상 청구액 635,868,000원의 45.7%)
- 제1심 판결배상액의 50%인 145,460,000원을 예비비에서 지급
- 제2심 1999. 11. 4. 대천고등법원 원금 270,787,309원 배상 판결 (원고 및 피고의 상고 포기: 2심 판결금액으로 확정)
- 제2심 확정 판결액(270,787,309원) 및 지연이자(37,202,265원)중 중간지급액(145,460,000원)과 원고부담 소송비용(1,144,574원),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결정액(40,000,000원)을 공제한 121,385,000원을 예비비에서 지급
- 사고학생 김선우의 치료비중 공단부담금 11,981,490원중 원고의 과실 비율 50%를 공제한 5,990,740원을 국민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(제3자에 대한 구상권)규정에 의거 구상금 청구가 있어 이를 예비비에서 지급

② 제천중학교 민간인 사망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

- 1999. 1. 7, 15:40경 제천중학교 후관 담장벽에 설치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(쇠파이프로 제작)가 돌풍에 날려 때마침 지나가던 민간인 김준성의 머리를 때려 사망한 사고임
- 피해자의 처인 김계자의 3명(자녀)이 청주지구 배상심의회에 123,836,270 원을 배상 신청하여 동 심의회에서 '99. 5. 20. 신청인에게 39,450,090 원을 지급하라고 배상결정되어 이를 예비비에서 지급